회장 후보자의 자격

가. 후보자의 자격

제13조(후보자의 자격)

<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>

<u>규약 제2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.</u>

구분		시 회원종목단체장 출마 시	비고
회장(본인 단체)		직무대행(국제허용)	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
회장 외 임원 (본인단체)		직위유지,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	
직원(본인 단체)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
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		사임	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
대한체육회 임직원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
시체육회 임직원	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
시 종목단체 임직원	회장	직무대행(국제허용)	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
	회장 외 임원	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	
	직원	사임	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